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환 경 보 건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한 정 애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지자체 소속으로 설치토록 하는 「환경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7007호, 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되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활동공간에 적용하고 있는 중금속 납 관리(검출)기준을 0.06퍼센트에서 0.009퍼센트로 강화하는 한편, 내분비계장애 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류(7종)를 합성수지 및 고무 재질 바닥재의 관리물질로 새로이 지정하고 「실내공기질관리법」상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준수한 430㎡이상의 어린이집은 「환경보건법 시행령」상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규제합리화)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광역지자체의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매 10년) 세부 규정 신설 (안 제2조의2)
- 나. 지역환경보건위원회 구성·운영(20명 이내) 세부 규정 신설 (안 제10조의2)
- 다. 지역건강영향조사반 구성·운영(15명 이내) 세부 규정 신설 (안 제13조의2)
- 라. 어린이활동공간 내 납 및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 강화 (안 별표 2)
- 마.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준수 의제조항 신설 (안 제16조제4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0년마다 세워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현황과 지역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3.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4.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환경보건 관련 재원의 조달 방안
 6. 그 밖에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종합계획의 변경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역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에 영향이 없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 ③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환경보건위원회의 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4조의3(위원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실장”을 “생활환경정책실장”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3. 지역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간사,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수당과 여비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4조의2, 제4조의3,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환경부”는 “시·도”로 본다.

제13조의2를 제13조의4로 하고, 제13조의2,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운영 및 임무)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건강영향조사반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둔다.

② 중앙건강영향조사반과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은 각각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건강영향조사반 및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의 반원은 중앙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보건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역학(疫學) 전문가
3. 환경노출평가 전문가
4. 인체 독성 전문가
5. 환경피해대상 질환과 관련된 임상 의사

6. 보건 통계 전문가

7. 환경 매체별 전문가

8.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건센터의 전문가

④ 건강영향조사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건강영향조사반

가. 건강영향조사 계획의 수립

나. 건강영향조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개발

다. 지역건강영향조사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라. 환경유해인자에 의한 건강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지역건강영향조사반

가. 관할 지역의 건강피해 예방 또는 저감을 위한 건강영향조사
계획의 수립

나. 관할 지역의 주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의 실시 기
준 및 방법 개발

다. 중앙건강영향조사반에 관할 지역건강영향조사 결과 보고

라. 관할 지역의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질병 발생 등 건강 관련 현
황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⑤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건강영향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활동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의3(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

1. 대책의 추진 기간
2. 매체별 환경오염 관리방안
3. 관할 지역의 환경유해인자 배출 관련 모니터링 방안
4. 기타 수용체의 건강상태 평가 및 건강피해 저감 방안

② 제1항에 따라 대책을 세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대책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시설(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별표 2 제2호가목, 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제1항의 기준(별표 2 제2호가목, 제5호가목부터 다목에 한함)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최근 1년 이내에 실내공기질을 측정 한

결과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지기준과 최근 2년 이내에 실내공기질을 측정 한 결과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권고기준에 맞게 관리한 경우에는 별표 2 제6호가목 및 나목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9조제4항제3호 중 “함유되어 있는”을 “들어있는”으로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어린이 진료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① 법 제25조의2에 따른 진료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진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결정 등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제4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으며, 법 제25조의2에 따른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환경보건센터에 위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25조의2에 따른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법 제21조의 환경보건지표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환경보건센터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은”을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무”를 “사무(시·도지사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역학조사”를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평가”를 “역학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사무”를 “사무(시·도지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25조의2에 따른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에 관한 사무(시·도지사는 제외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함유된”을 “들어있는”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0.06퍼센트”를 “0.009퍼센트”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실내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바닥재(표면재료)에 들어있는 프탈레이트가소제[DEHP(Di-2-ethylhexyl phthalate), DBP(Dibutyl phthalate), BBP(Butyl benzyl phthalate), DINP(Diisononyl phthalate), DIDP(Diisodecyl phthalate), DnOP(Di-n-octyl phthalate, DIBP(Diisobutyl phthalate)를 말한다. 이하 같다] 총 함유량은 0.1퍼센트 이하일 것

별표 2 제5호가목 중 “함유된”을 “들어있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해당 표면재료의 프탈레이트가소제 총 함유량은 0.1퍼센트 이하일 것

별표 5 제1호가목 전단 중 “부과기준”을 “가중된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를 “제2호의 개별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3)을 삭제하고, 같은 목 나목4)를 3)으로 하며, 같은 4)(종전의 4)) 중 “동기”를 “위반행위의 동기”로 하고, 같은 표 별표 5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	1,500	1,500	1,500
--	------------	-------	-------	-------

별표 5 제2호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3조 제3항	100	200	300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관한 특례)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제1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조 본문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지역환경보건계획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0년마다 세워야 한다.</u> <u>1.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현황과 지역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u> <u>2.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u> <u>3.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u> <u>4.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u>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환경보건 관련 재원의 조달 방안

6. 그 밖에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종합계획의 변경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역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에 영향이 없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

<신 설>

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환경보건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신 설>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4조의3(위원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제7조의2(석면안전관리위원회)

①·② (생략)

③ -----

----- 환경정책실장

의 -----

-----..

1·2 (생략)

④~⑦ (생략)

<신설>

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의2(석면안전관리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생활환경정책

실장이 -----

-----..

1·2 (현행과 같음)

④~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법 제10조의2제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

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

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

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 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3. 지역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간사,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수당과 여비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4조의2, 제4조의3,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환경부”는 “시·도”로 본다.

제13조의2(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운영 및 임무)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건강영향조사반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둔다. ② 중앙건강영향조사반과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은 각각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건강영향조사반 및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의 반원은 중앙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보건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역학(疫學) 전문가
3. 환경노출평가 전문가
4. 인체 독성 전문가
5. 환경피해대상 질환과 관련된 임상 의사
6. 보건 통계 전문가
7. 환경 매체별 전문가
8.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건센터의 전문가

④ 건강영향조사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건강영향조사반
 - 가. 건강영향조사 계획의 수립
 - 나. 건강영향조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개발
 - 다. 지역건강영향조사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라. 환경유해인자에 의한 건강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지역건강영향조사반

가. 관할 지역의 건강피해 예방 또는 저감을 위한 건강영향조사 계획의 수립

나. 관할 지역의 주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 개발
다. 중앙건강영향조사반에 관할 지역건강영향조사 결과 보고

라. 관할 지역의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질병 발생 등 건강 관련 현황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⑤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건강영향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활동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

<신 설>

제13조의2 (생 략)

제16조(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①·② (생
략)

<신 설>

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의3(환경매체와 환경유해
인자 관리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
해인자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

1. 대책의 추진 기간

2. 매체별 환경오염 관리방안

3. 관할 지역의 환경유해인자
배출 관련 모니터링 방안

4. 기타 수용체의 건강상태 평
가 및 건강피해 저감 방안

② 제1항에 따라 대책을 세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대책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해야 한다.

제13조의4 (현행 제13조의2와 같
음)

제16조(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

<신 설>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① ~ ③ (생 략)
④ 법 제24조제9항 전단에서
“해당 어린이용품, 요청 사실 등

검사를 받은 시설(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해당한
다)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별표 2
제2호가목, 제5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제
1항의 기준(별표 2 제2호가목, 제
5호가목부터 다목에 한함)을 갖
춘 것으로 본다.

④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제12호에 따른 어린이집
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3조제1
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이 최근 1년 이내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같
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지기준과
최근 2년 이내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권고기준에 맞게 관리한
경우에는 별표 2 제6호가목 및
나목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
다.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2. (생략)

3. 해당 어린이용품에 함유되어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4. 5. (생략)

⑤ (생략)

<신설>

-----.

1. 2. (현행과 같음)

3. ----- 들어있는

4. 5.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어린이 진료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① 법 제25조의2에 따른 진료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②·③ (생략)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 5. (생략)

<신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진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결정 등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25조의2에 따른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6. (생략)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2. (생략)

⑥ (생략)

<신설>

⑦ (생략)

업무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⑤ -----

있으며, 법 제25조의2에 따른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환경보건센터에 위탁한다.

1.·2.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법 제21조의 환경보건지표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환경보건센터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

----- 포함한다)

은 -----

-----.

1.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
건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에 관
한 사무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역학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
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사무

4. · 5. (생략)

6.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에 관한 사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

-----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는 -----

-----.

1.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
건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에 관
한 사무(시·도지사는 제외한
다)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
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역학
조사에 관한 사무

4.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에 관한 사

<u>문</u> <u><신 설></u>	<u>무(시·도지사는 제외한다)</u> <u>7. 법 제25조의2에 따른 어린이</u> <u>에 대한 진료 지원에 관한 사</u> <u>무(시·도지사는 제외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보건정책과	
연 락 처	(044) 201-6764